

광주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단5045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희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0.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8. 2. 20. 접수 제29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1) 원고는 2015. 8. 2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게 B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B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 (2) B은 2017. 12. 29.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D), 소외 은행은 2018. 1. 2. 원고에게 B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 (3) B은 2018. 2.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8. 2. 20. 접수 제29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4) B은 2018. 6. 1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 (5) 원고는 2018. 6. 27. 소외 은행에게 B의 대출채무 92,549,342원(= 원금 90,000,000원 + 이자 2,549,342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143,010원을 회수하였고, 2021. 1. 15. B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237,450원을 지출하였다.
- (6) B은 2018. 9. 18.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9. 11. 29.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등 B에 대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는 2018. 1. 2.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받고 2018. 6. 27. 소외 은행에게 B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소외 은행에게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에 B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2021. 7. 8. 제출한 서면 포함)에 의하면, B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후 원고가 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E'에 대한 업체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내용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상태이고, F은행 이자 연체 및 다수 카드대금 연체 상태로서, 실질적인 폐업 상태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8.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18. 6. 14.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바,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8. 6. 14.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2. 4.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으나, B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았고, 2020. 8.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실을 알게 된 후 2021. 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전에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제척기간 기산점을 앞서 인정한 것과 달리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제척기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고(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등 참조),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이 중단이 있을 수도 없으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이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당시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앞서 인정한 것과 달리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제척기간의 중단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

목 록

1. 전남 화순군 G 전 440㎡
2. 전남 화순군 H 답 1012㎡
3. 전남 화순군 I 전 298㎡, 끝.

